

2019년도 제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19. 3. 5. (화요일)
- 장 소 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 - 심의위원 : 박성호, 임진모, 전용준(분과위원장)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

2.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

3. 안건상정 분과위원장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보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4. 폐회선언 분과위원장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8건(안건번호 제2019-1223호~1292호)
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, 심의시점에 게시물이 삭제되어 있어 '불법복제물등'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3개 안건(제2019-1223~1225호)은 부결하기로 의결함

Ⅲ. 회의 의사록

1. 개회선언
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

2.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- A 위원 :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견 없으며,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
- 성원영 전문위원 : 온라인서비스명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- A 위원 : 온라인서비스명도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견 없음을 확인하며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

3. 안건상정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성원영 전문위원 :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-1223호~1292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158건임
우선 안건번호 제2019-1223~1225호는 심의시점에 이미 삭제되어 ‘불법복제물등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게시물에 대한 사안이고, 안건번호 제2019-1226호는 일본 만화를 무단 번역한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사안이며, 안건번호 제2019-1227~1235호는 웹하드에 게시된 성인용 영상물에 대한 사안이고, 마지막으로 안건번호 제2019-1236~1292호는 웹하드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단순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안임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-1223~1225호 심의시점에 이미 삭제되어 ‘불법복제물등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(블로그 내 해당 게시물들을 보여주면서)본 사안은 일반인이 신고한 것으로, 해당 게시물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,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‘불법복제물등’이 전송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부분들도 존재하여 2차적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음
- A 위원 : 저작권법상 ‘전송’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및 그에 따른 송신을 말하므로 업로드된 것만으로도 ‘전송’으로 보아야 하며,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도 ‘전송’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보호원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‘불법복제물등’

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미로 보고 드린 것임

- C 위원 : '전송'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, 일부 게시물에 존재하는 영상들은 권리자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'불법복제물등'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임
또한 보호원이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게시자는 취미생활로 번역을 하는 것으로 보임
- 성원영 전문위원 : (해당 블로그를 보여주면서)실제로 게시자는 블로그에서 '덕질'을 위하여 취미로 번역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
무엇보다 게시자가 스스로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삭제하였음
- B 위원 : 게시자가 취미생활로 직접 번역하여 게시하고 있고, 일부 영상은 권리자에 의해 무료로 공개되고 있는 등 권리자와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'불법복제물등'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안전번호 제2019-1223~1225호는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었고 보호원이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'불법복제물등'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만장일치로 부결함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-1226호 일본 만화를 무단 번역한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(블로그 내 해당 게시물을 보여주면서)본 사안은 일반인이 신고한 것으로, 일본 만화 한 화를 한글로 번역하여 전부

게시한 사안이며, 게시자는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 총 6화 분량의 동일 만화 번역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음

- C 위원 : 번역 자체는 자유로운 표현의 한 영역이나, 시장에 배포될 가능성이 높은 만화 저작물 한 화 전부를 번역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
- A 위원 : 사적이용을 위하여 번역하는 것은 허용되나, 해당 사안은 만화 저작물도 함께 올린 것이기 때문에 시정권고 필요성이 존재함
- B 위원 : 게시자가 번역한 부분에 대하여는 2차적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함
- A 위원 : 2차적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, 원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이용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음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안전번호 제2019-1226호는 만화의 한 화 전체분량의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으며,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도 여러 화의 만화 번역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함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-1227~1235호 웹하드에 게시된 성인용 영상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(웹하드 내 해당 게시물들을 보여주면서)본 사안

은 일반인이 신고한 것으로, 해당 게시물들은 웹하드에 성인용 영상물을 올린 것임

해당 영상물은 모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들로 국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음

- A 위원 :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아 국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영상물들을 무단 복제하여 웹하드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 함이 타당함
- B 위원 :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 함이 타당함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안전번호 제2019-1227~1235호는 국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영화들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올려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함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-1236~1292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 화면,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)안전번호 제2019-1236~1292호 게시물은 모두 원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.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1236~1292호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를 의결하기로 함

(경고,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1223~1225호 게시물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며, 나머지 안전번호 제2019-1226호~1292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”

4. 폐회 선언

- 전용준 분과위원장이 제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

2019년 제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3. 12.

분과위원장 전용준

위원 박성호

위원 임진모